

#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석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6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일 : 2013. 10.

발의자 : 송석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주거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(안 제34조)
  -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를
  - 1. 높이 4미터 미만인 부분은 1.5미터 이상
  - 2. 높이 4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
  - 3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  
으로 하고

현행 충주시건축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의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

## 3. 관계법령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(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#### **4. 입법 예고 결과 :**

- 찬성: 1건(이문수 외 65명 연서)  
→ 낙후된 도심지역 재개발 촉진, 분양가 다운,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
- 반대: 4건(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, 충청리더스 대표 조영하,  
충북환경운동 연대,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충주지부)  
→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민원발생, 녹지공간감소로 주거환경 저해

#### **5. 기타 참고사항(집행부 의견조회)**

- 일조권 부족 및 사생활 침해로 집단민원 및 분쟁발생 심화
- 단지 내 주차장 및 조경(녹지)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저해
- '97년부터 시행하여 완전히 정착된 공동주택행정 혼란 초래  
→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사례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조권 완화시  
건축행정을 1980~90년대 수준으로 후퇴 시키는 결과

충주시 조례 제 호

**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 중 “이하인”을 “미만인”으로, “1미터”를 “1.5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8미터”를 “4미터 이상 9미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8미터”를 “높이 9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고자 하는 높이 이상의 기존  
공동주택이 있는 경우(택지개  
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 
총수가 결정된 공동주택 부지  
와 분양승인이 완료된 공동주  
택 부지 포함)에는 0.6배, 20  
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
에는 0.7배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